

【 3 】 양주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6. 1. 23.

제출자 : 양주군수

□ 제안이유

국내여비 규정중 개정령이 '95. 12. 19 국무회의 상정·의결 공포되어 양주군공무원의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함과 아울러 전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기타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출장경비의 실질적 보전을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평균 53% 인상
- 전임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이전비를 직급·가족동반 및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것을 앞으로는 이동 거리만을 기준으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하 고 그 지급액을 대폭 인상 함.

## 양주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

양주군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### 양주군여비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양주군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)**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(이하 “월액여비”라 한다.)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.  
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,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.  
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·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**제3조(국내여비규정의 준용)** 양주군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- 1.국내여비규정 제8조 제1항·제3항 및 제16조 제3항 단서중 “소속 장관”은 각각 “군수”로 본다.
- 2.국내여비규정제8조 제3항중 “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” 및 제16조 제3항 단서중“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본다.

- 3.국내여비규정 제17조 제1항 단서중“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”는 “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”로, “동규정 제21조”는 “동규칙 제17조”로 본다.
- 4.국내여비규정[별표1]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중 “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관한규정”은 “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”으로, 동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종 “전문직공무원규정”은 “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”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 공무원란중 “공무원보수규정”은 “지방공무원보수규정”으로 본다.

**제4조(국외여비규정의 준용)**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되,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

- 1.국외여비규정 제8조 제1항의 “소속장관”은 “군수”로 본다.
- 2.국외여비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- 3.국외여비규정 제21조 및 제26조 제4항중 “소속장관”은 각각“군수”로 본다.
- 4.국외여비규정 제24조 제1항 단서중 “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”은 “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”으로 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